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도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명		•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e
상품 주요 내용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투자 전 펀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 이 펀드는 기술진보 및 기술향상을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이를 개발할 전세계 기업의 주식형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자산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	• 이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의 주요위험인 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위험, 분산투자관련위험, 국가위험,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또는 중단위험, 특정(섹터)업종 집중투자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외국 집합투자기구설립지 국가위험,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수수료 등 제반비용	• 판매 수수료: 없음 • 총 보수: 연 0.662% (운용 연 0.1%, 판매 연 0.5%, 수탁 연 0.04%, 일반사무관리 연 0.022%)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증권·부동산·특별 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 융 상품에 투자
○				

※ 아래 내용은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펀드는 원금의 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Q2. 펀드를 가입할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3. 펀드를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편입된 주식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펀드의 결산, 재투자자는 무엇인가요?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운용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기반으로 펀드의 위험등급 산정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 회사는 수익률의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6단계 투자위험등급에 따라 펀드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tr><th rowspan="2">위험등급</th><th colspan="2">위험등급의 의미</th><th rowspan="2">유의사항</th></tr><tr><th>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미만 펀드)</th><th>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th></tr><tr><td>1등급 매우 높은 위험</td><td>① 레버리지등수익구조가특수하여투자시주의가필요한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20%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td><td>50% 초과</td><td>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td></tr><tr><td>2등급 높은 위험</td><td>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td><td>50% 이하</td><td>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td></tr><tr><td>3등급 다소 높은 위험</td><td>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20%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td><td>30% 이하</td><td>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td></tr><tr><td>4등급 보통 위험</td><td>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td><td>20% 이하</td><td>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td></tr><tr><td>5등급 낮은 위험</td><td>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td><td>10% 이하</td><td>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td></tr><tr><td>6등급 매우 낮은 위험</td><td>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td><td>1% 이하</td><td></td></tr></table>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미만 펀드)	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등수익구조가특수하여투자시주의가필요한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20%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20%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미만 펀드)	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등수익구조가특수하여투자시주의가필요한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20%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20%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등급 변동관련 유의사항

- 공모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운용회사의 결정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최초 투자시점 이후에도 수시로 펀드의 투자 위험도를 확인하고, 투자 및 보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펀드의 투자위험등급 정보는 판매사 및 운용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공시 사이트의 투자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성향별 투자적합 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하 상품	3등급 (다소높은위험) 이하 상품	4등급 (보통위험) 이하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이하 상품	6등급 (매우낮은위험) 상품

*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시가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수익률이 위험을 대변하지 못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산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 산정함.

예금자 보호

보호

- 이 예탁금 중 증권 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비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림	필수 사항	- 매매신청, 결제 안내: 카카오톡(알림톡) - 실질투자수익률 안내: App PUSH * 카카오톡(알림톡) 알림이 불가할 경우 App PUSH 또는 SMS발송 * App PUSH 알림이 불가할 경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SMS 발송 - 수시공시/소규모해지 공시 안내: 이메일
	기타	- 펀드 관리 알림*: App PUSH, 카카오톡(알림톡) * 매매 펀드 및 약정 기반 주요내용 안내
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akaopaysec.com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 달 전까지 통지하여 드립니다.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펀드 투자금 자동산정 서비스 * 동전 모으기: 카카오페이 결제 시 발생한 1천원 미만 잔돈(예: 1,200원 결제 시 800원이 잔돈)을 지정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 * 자동투자: 투자 주기(예: 주, 월 등)와 매회 투자 금액을 설정하여 지정한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투자 - 연계·제휴서비스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당사: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 제휴사 제공, 계산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 - 제휴사(카카오페이):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에 따른 카카오페이증권의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 제공(결제 금액 등) - 연계·제휴서비스의 제공기간 - 당해 서비스 해지 시까지 - 연계·제휴서비스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지사항에 게시.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까지 통지 - 연계·제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실명 확인된 계좌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본인 명의로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청약 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단위형 펀드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 동 펀드는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소비자보호포털>공시/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자료열람청구)
자주묻는 질문	펀드 및 계좌, 출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페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FAQ / 카카오페이 앱>전체 > 카카오페이증권 > 펀드 > 투자 가이드)
금융사기 예방	- 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 -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pd.fss.or.kr) ※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akaopaysec.com) 또는 고객센터(1600-8515)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해지	-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 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의무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해지 관련 사항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1. 회사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08.10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B3992]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00%까지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며, 모두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및 재간접투자 위험, 신흥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에 따른 신흥시장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투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모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글로벌테크놀로지펀드(Fidelity Funds-Global Technology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기술진보 및 기술향상을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이를 개발할 전세계 기업의 주식형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연, %)	판매보수 (연, %)	동종유형 총보수 (연, %)	총 보수·비용 (연, %)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이내	0.8620	0.7000	0.8900	1.9652	298	508	728	1,201	2,6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없음	1.3620	1.2000	1.2000	2.4652	253	507	752	1,254	2,74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120	0.3500	0.5800	1.6152	214	387	569	960	2,1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0.6620	0.5000	0.7300	1.7652	181	371	570	1,000	2,2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없음	0.6620	0.5000	-	1.7652	181	371	570	1,000	2,275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분산투자관련 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 또는 설립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지수산출 방식의 변경 또는 중단 위험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산출되며, 산출 방식의 변경, 산출기관의 시스템 장애,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잘못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수산출기관의 기준 및 방침에 따라 지수의 구성종목이나 비중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업종(섹터) 집중투자 위험	모투자신탁은 특정 업종(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섹터)의 경기 민감도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어느 거래일에 발생한 펀드의 순거래량이 펀드의 이사회에서 수시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펀드 수준에서 발생한 순일일거래량을 처리하기 위해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예상 스프레드, 중개수수료, 거래세, 커미션 및 거래비용 등)을 반영하여 기준가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합니다. 순거래량으로 인해 순매입거래액이 발생한 경우, 가격은 상향조정 되며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는 거래 비용이 반영된 더 높은 가격으로 펀드를 매입하게 됩니다. 순거래량으로 인해 순환매거래액이 발생한 경우, 가격은 하향조정 되며,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는 거래 비용이 반영된 더 낮은 가격으로 펀드를 환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자산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장기 투자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시장상황, 예상 희석화 비용 및 펀드의 규모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펀드의 이사회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며, 이러한 정책은 일상적인 가치평가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조정된 자산가치는 당일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6 영업일(D+5)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7 영업일(D+6)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동일 투자신탁내 전환: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최초로 매입하는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수체감 (C1)에 한합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60 조 좌	
효력발생일	2026 년 08 월 12 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63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2년 11개월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2년 11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1~C4)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RS)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계열사 자금(N)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각 종류(클래스)별 세부 가입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